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가단1436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고1. B

2.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1. 3.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452,892원 및 그 중 16,614,376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9. 12. 접수 제18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반정모

별지